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은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항공기 항적, 비행계획서 등은 공공데이터로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공유 신청 등에 따른 연계시 시설 보호 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심사하는 의사결정기구도 객관화하여 기능을 개편할 필요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데이터 통합분배 시스템(SWIM) 플랫폼에 의하여 수집되고 공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도화

나. 전국 각 개소별 항행시스템의 필요정보를 최단 근거리에서 하나의 통합분배 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 및 사회적 부가 서비스 등 활용 목적에 따른 데이터 공급*방안 마련

* (민간)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치, 軍 항공기 레이더 항적 제공 제외 등

라.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검토협의회”를 “항행위성정책위원회”로 기능을 개편하고 절차를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별지서식 별첨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23호를 신설하여 “23.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란(이하 “항행 공공데이터”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서 생성되어 전자적방식으로 처리되어 공유하거나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로 하며 제24호를 신설하여 “24. 종합정보관리시스템“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서 생성 취득하여 공유 또는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STDDS : SWIM Terminal Data Distribution System)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5호의 “항행안전”을 “항행안전시설 데이터 등”으로 한다.

제8장 “항행시설기술검토협의회 설치”를 “정책위원회 등의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54조의 “(항행시설기술검토협의회의 설치)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 항행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및 운영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자문 및 검토하기 위하여 항행시설기술검토협의회(이하“기술검토협의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를 “(정책위원회의 설치) 관련고시 등 규정에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검사, 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항행위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55조의 “(기능) 기술검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검토에 응한다.”는 “(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조정, 자문 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제1호의 “유지보수교범 등 지침서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에 따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을 “이 규정 각호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55조제2호의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의 개선사항”을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로 하며, 제55조제3호의 “항행시설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55조제4호의 “항행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중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5조제5호의 “5. 새로운 시설의 도입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제6호의 “6. 기타 항행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한다.

제56조의 “(구성)”은 “(정책위원회의 구성)”로 하며, 제1항의 “기술검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간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검토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의 “협의회장은 기술검토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를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제56조제2항제1호의 “1. 항공통신·전자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비행검사관”과 제2호의 “2.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하는 자중 항공통신·전자분야의 처장급 이상 임직원”과 제3호의 “3. 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에서 항행시설분야를 가르치거나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과 제4호의 “4. 기타 항공통신·전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뛰어난 자”는 삭제한다.

제56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산하기관, 협회 등 민간에서 위촉한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장, 소속기관 국장급 직위에서 정책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제5항을 신설하여 “외부위원은 심의, 조정, 자문 등 정책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각 1인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분과장 4인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로 한다.

제57조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설치)”로 하며, 제57조의 “① 기술검토협의회 회의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또는 검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검토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행안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회

의소집 7일전까지 검토위원회에 회의의 안전과 검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신설하여 “(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기술자문 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로 하며,

제57조의2의제1호를 신설하여 “이 규정 각호에서 정하는 평가, 조정,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평가 및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로 하며, 제3호를 신설하여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서 요구되는 평가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의 연구·검토 등 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로 하며 제5호를 신설하여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중에서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로 한다.

제57조의3을 신설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며, 제1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 사무관급,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에서 항행위성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외부위원은 전문위원회 개최시 제57조의4에 의한 외부 전문위원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제57조의4를 신설하여 “(외부 전문위원 위촉관리)”로 하며, 제1항을 신설하여 “이 규정 제8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외부위원에 대해 “관리운영, 항행무선,

항공통신, 우주위성” 4개 전문분과로 구성하여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지정하고 분과별 8인 내외로 위촉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촉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촉된 외부 전문위원은 제56조의 제5항 또는 제57조의 3에 의하여 위원회 개최시 지정한다.”로 한다.

제9장을 신설하여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관리”로 한다.

제58조의 “(회의록)”을 “간사는 기술검토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를 “(공공데이터 생성관리)”로 하고, 제58조제1항을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항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량·유지보수 등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항 “항행시설관리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해킹 등 사이버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로 하고, 제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항행시설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관리하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하고, 제58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실시간 공유하거나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한다.”로 하며, 제58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항행 공공데이터의 공유 또는 제공받고자 할 때는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로 한다.

제59조의 “(의결) 안건은 기술검토협의회 검토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으로 하고 제59조 제1항을 신설하여 “제58조의2 제1항에 의거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유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9호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의 범위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의 중단)”로 하고, 제59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제59조제1항에 의거 허가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항행시설관리자는 지체 없이 항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을 통보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로 하며, 제59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항행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제공이 중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중단사유를 해소하고 중단취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그 조치사항을 검토 한 후 중단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세부 지침”을 “제10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세부 지침”으로 하며 “제10장 유지보수자 교육수료”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8조의2 제3항에 대하여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별지 19호 서식(신설)〉 : 별첨1

〈별지 20호 서식(신설)〉 : 별첨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호 ~ 22호(생략) <신 설>	제2조(정의) 1호 ~ 22호(현행과 같음) <u>23.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란 (이하 “항행 공공데이터”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서 생성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공유하거나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u> <u>24. “종합정보관리시스템”란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유 또는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STDDS : SWIM Terminal Data Distribution System)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u>
제4조의2(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1. ~ 4.(생략) 5. 그 밖에 <u>항행안전 서비스</u> 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1. ~ 4.(생략) 5. 그 밖에 <u>항행안전시설 데이터 등 서비스</u> 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u>제8장 항행시설기술검토협의회 설치</u>	<u>제8장 정책위원회 등의 관리운영</u>
제54조(항행시설기술검토협의회)	제54조(정책위원회의 설치) 관련

현행	개정안
<u>설치)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 항행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및 운영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자문 및 검토하기 위하여 항행시설기술검토협의회(이하 “기술검토협의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u>	<u>고시 등 규정에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검사, 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항행위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제55조(기능) 기술검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검토에 응한다.</u> <u>1. 유지보수교범 등 지침서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에 따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u> <u>2.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의 개선사항</u> <u>3. 항행시설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4. 항행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u> <u>5. 새로운 시설의 도입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u> <u>6. 기타 항행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5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을 할 수 있다.</u> <u>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u> <u>3. 제5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u> <u>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중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5. <삭제></u> <u>6. <삭제></u>
<u>제56조(구성) ① 기술검토협의회는</u>	<u>제56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u>

현행	개정안
<u>협의회장 1명, 간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검토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② <u>협의회장은 기술검토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u> 1. <u>항공통신·전자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비행검사관</u> 2. <u>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하는 자중 항공통신·전자분야의 처장급 이상 임직원</u> 3. <u>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에서 항행시설분야를 가르치거나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u> 4. <u>기타 항공통신·전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뛰어난 자</u> <신 설> <신 설> <신 설>	<u>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u> ② <u>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u> ③ <u>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산하기관, 협회 등 민간에서 위촉한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u> ④ <u>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장, 소속기관 국장급 직위에서 항공안전정책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 ⑤ <u>외부위원은 심의·조정·자문 등 정책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전</u>

현행	개정안
<신 설>	<u>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각 1인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분과장 4인으로 구성한다.</u> <u>⑥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안전상정,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u>
<u>제57조(회의) ① 기술검토협의회 회의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또는 검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검토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검토위원에게 회의의 안전과 검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5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행안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② <삭제>
<신 설>	<u>제57조의2(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기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조정·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u>

현행	개정안
	<u>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평가 및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u> <u>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서 요구되는 평가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u> <u>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검토 등 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중에서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u>
〈신 설〉	<u>제57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u> <u>③ 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 사무관급,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에서 항행위성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 <u>④ 외부위원은 전문위원회 개최시 제57조의4에 의한 외부 전문위원에서 지명한다.</u>
〈신 설〉	<u>제57조의4(외부 전문위원 위촉관리) ① 외부위원은 “관리운영, 항행무선, 항공통신, 우주위성” 4개</u>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u>전문분과로 구성하여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지정하고 분과별 8인 내외로 위촉하여 관리한다.</u> <u>② 위촉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③ 위촉된 외부 전문위원은 제56조의 제5항 또는 제57조의 3에 의하여 위원회 개최시 지정한다.</u>
<신 설>	제9장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관리
<u>제58조(회의록) 간사는 기술검토협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u> <u><신 설></u> <신 설>	<u>제58조(공공데이터 생성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량·유지보수 등 관리하여야 한다.</u> <u>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해킹 등 사이버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u>
<신 설>	<u>제58조의2(공공데이터 제공)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관리</u>

현행	개정안
	<u>하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실시간 공유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u>
<u>제59조(의결) 안건은 기술검토협의회 검토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59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①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유 또는 제공받거나 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9호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u> <u>② 항행 공공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 범위 등에 대해 항행시설관리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u> ✓ <u>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u>
<신 설>	<u>제59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의 중단)</u>

현 행	개 정 안
	① 제5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의 공유 또는 제공 중단 사유를 통보 후 항행 공공데이터를 중단할 수 있다. ② 항행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제공이 중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중단사유를 해소하고 중단취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그 조치사항을 검토 한 후 중단을 취소할 수 있다.
<u>제9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세부 지침</u> 제60조(생략) ~ 제63조(생략)	<u>제10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세부 지침</u> 제60조(현행과 같음) ~ 제63조(현행과 같음)
<u>제10장 유지보수자 교육수료</u> 제64조(생략) ~ 제66조(생략)	〈삭제〉 제64조(현행과 같음) ~ 제66조(현행과 같음)
제11장(생략) ~ 제13장(생략) 제67조(생략) ~ 제76조(생략)	제11장(현행과 같음) ~ 제13장(현행과 같음) 제67조(현행과 같음) ~ 제76조(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2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까지</u>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재검토기한) ----- - <u>2023년 8월 1일</u> -----(-----6월30일-----)
<신 설> <신 설>	<u><별지 19호 서식> (별첨1)</u> <u><별지 20호 서식> (별첨2)</u>

〈별첨 1〉

[별지 제19호서식]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제공(공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항행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항공사사장(○ ○ ○ ○ 청장) 귀중

..... 자 르 는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 공항공사사장(○ ○ ○ ○ 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

[별지 제20호서식]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취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중단 내용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중단일		
	제공중단의 사유와 경과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9조의2에 따라 항행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항공사사장(○ ○ ○ ○ 청장) 귀중

..... 자 르 는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 공항공사사장(○ ○ ○ ○ 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